

〈총회 운영 규약〉

거거덩협동조합 총회 승인 (2024 년 3 월 26 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약은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안’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을 말한다.
2. ‘안건’은 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의결’은 의논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과 부결을 포함한다.
4. ‘표결’은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총회의 운영

제 4 조(총회개최공고)

공고방법은 정관 제 33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총회소집통지)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문자), 이메일 또는 SNS 를 활용할 수 있다.

제 6 조(재적조합원의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조합원은 총회개최 전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 7 조(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의 이름을 정리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총회개최일 총회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 제 37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
 1. 총회일 현재 정관으로 정한 최소 출자좌수를 납입하지 않은 자
 2. 총회일 현재 탈퇴 처리된 자 또는 총회에서 제명이 승인된 자

제 9 조(대리인의 자격)

- ① 대리인의 자격은 기본법 23 조(의결권 및 선거권)와 정관 제 38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조합의 지정된 양식에 따라 총회 개회 7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회의참여 및 외부인사참석)

- ① 사외이사 및 간부를 비롯한 조합의 직원 등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도 총회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1 조(의결정족수)

- ① 아래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제명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의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 ② 제 1 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의결사항)

-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기본법 29 조(총회의 의결사항 등)와 정관 제 34 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5 분의 1 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 ③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 13 조(의사의 진행)

- ①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결위 시 정관으로 정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정회 또는 회기 연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정회 또는 회기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 조(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은 총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 16 조(표결절차)

표결절차는 아래 각 호 사항의 순서대로 한다.

1. 의안에 대한 제안 및 설명은 이사장 또는 제안자가 한다.
2. 의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
3. 표결방법 제안
4. 표결
5. 결정사항에 대한 공표

제 17 조(표결의 순위)

-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2 개 이상 있을 때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 18 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기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에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② 기명날인 된 의사록은 5년 이상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종류
 - 2. 총회공고일자
 - 3. 개최 일시 및 장소
 - 4. 재적 조합원 및 참석 조합원 수
 - 5. 회의의 목적 사항
 - 6.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여부
 - 7. 의사의 진행 경과 및 결과
 -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 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

